

1. 개정이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종을 신설하는 등 내용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이 개정(법률 제19910호, 법률 제20950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영업의 승계 등 절차를 신설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를 위한 절차와 신고를 위한 각종 서식을 개정하고 신설(안 제25조, 제26조 개정,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및 별지 제19호의2 서식 신설).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을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도 적용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함(안 제25조의2제2항).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승계하려는 자에게 영업 승계 증명 서류를 신고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안 제2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으로, “등록)”을 “등록,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와”를 “자,”로, “자는”을 “자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으로, “변경등록)”을 “변경등록,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증”을 “등록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사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18호서식

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9호서식

3.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9호의2서식

④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조공정 및 절차 등

2. 제품의 성질·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

⑤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수입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 등

2. 제품의 성분 및 외관

⑥ 법 제27조제5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자

2. 보관시설의 소재지

제25조의2제2항 중 “행위 및”을 “행위,”로, “행위가”를 “행위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는 행위”로 한다.

제26조 중 “제4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3항”을 “법 제32조제5항”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관련업자”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업자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먹는해양심층수 관련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제조업자등 행정처분대장”을 “먹는해양심층수 관련업자 행정처분대장”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중 “각 목”을 “각 목 또는 법 제3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란 가목의 법 제32조제1항제1호란 다음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2조제2항제1호	영업장 폐쇄	-	-	-
--------------	--------	---	---	---

별표 8 제2호나목 중 “한 경우”를 “한 경우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 하고, 같은 란 나목의 법 제3

2조제1항제2호란 다음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2조제2항제2호	영업장 폐쇄	-	-	-
--------------	--------	---	---	---

별표 8 제2호사목의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2조제1항제7호, 법 제32조제2항제3호

별표 8 제2호아목의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2조제1항제8호, 법 제32조제2항제3호

별표 8 제2호자목의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2조제1항제9호, 법 제32조제2항제3호

별표 8 제2호카목의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2조제1항제11호, 법 제32조제2항제3호

별표 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3항	경고	허가 또는 등록취소		-
	법 제32조제4항	경고	영업장 폐쇄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호(·) 중 “등록번호”를 “신고·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19조·제27조제4항·제36조의2제4항”을 “제19조·제27조제9항·제36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면허증·허가증”을 “면허증·허가증·신고증”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등록)”을 “등록, 신고)”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목 “제조업자등 행정처분대장”을 “먹는해양심층수
관련업자 행정처분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먹는해양심층수 ☐ 제조업 허가
☐ 해양심층수처리수 ☐ 수입업 등록 신청서
☐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		영업의 종류	
제조공장(영업소) 소재지			
수입상대방			
제품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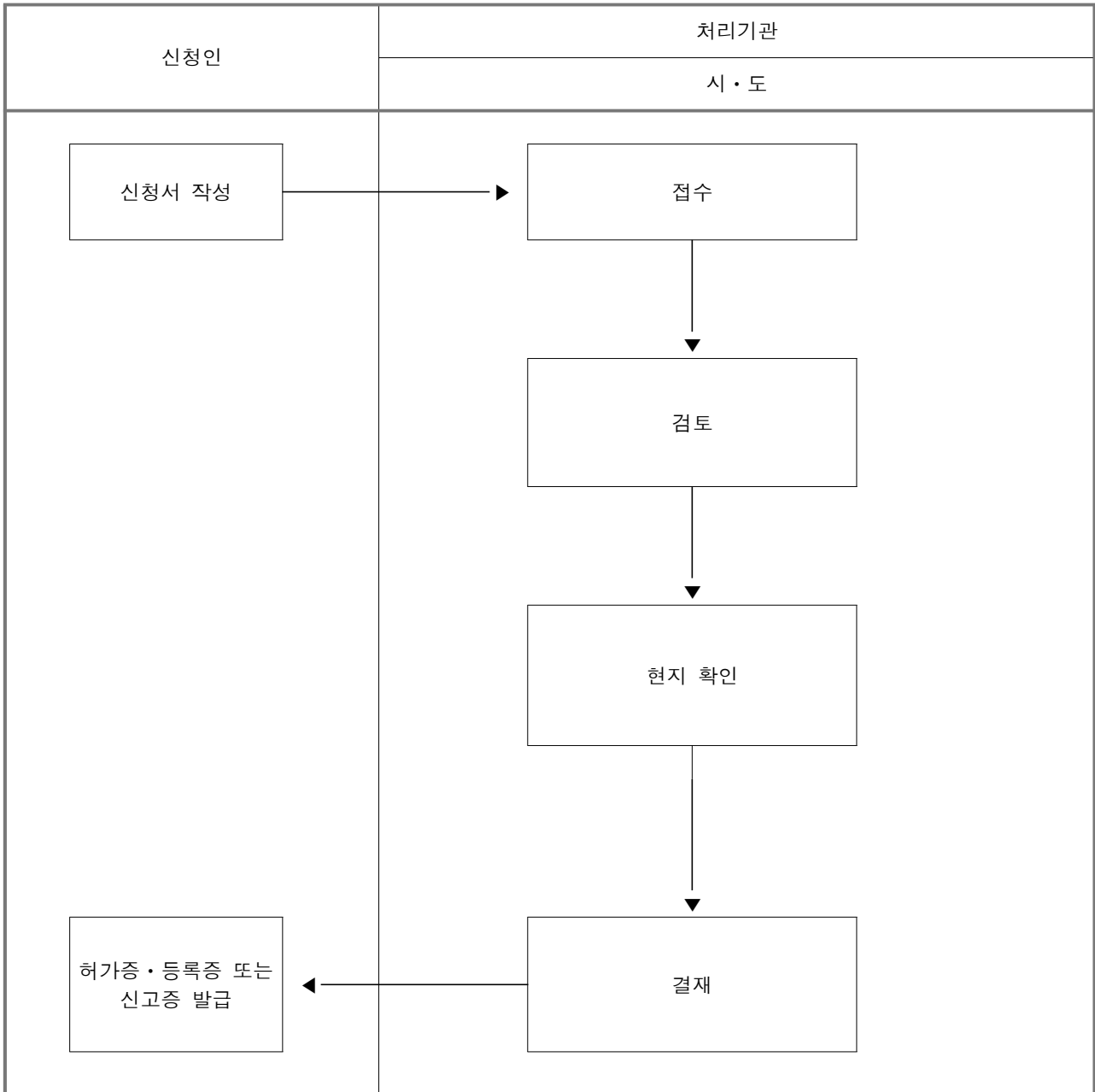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허가의 경우	1.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제조공정설명서 3.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음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 등록의 경우	1.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2. 보관시설 명세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의 경우	1. 사업계획서(제조사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합니다) 2.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 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먹는해양심층수 [] 제조업 변경허가
[] 해양심층수처리수 [] 수입업 변경등록
[]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		허가·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제조공장 소재지			
제조공정 및 절차 등			
제품의 성질·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			
수입상대방			
수입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 등			
제품의 성분 및 외관			
제조사			
보관시설의 소재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6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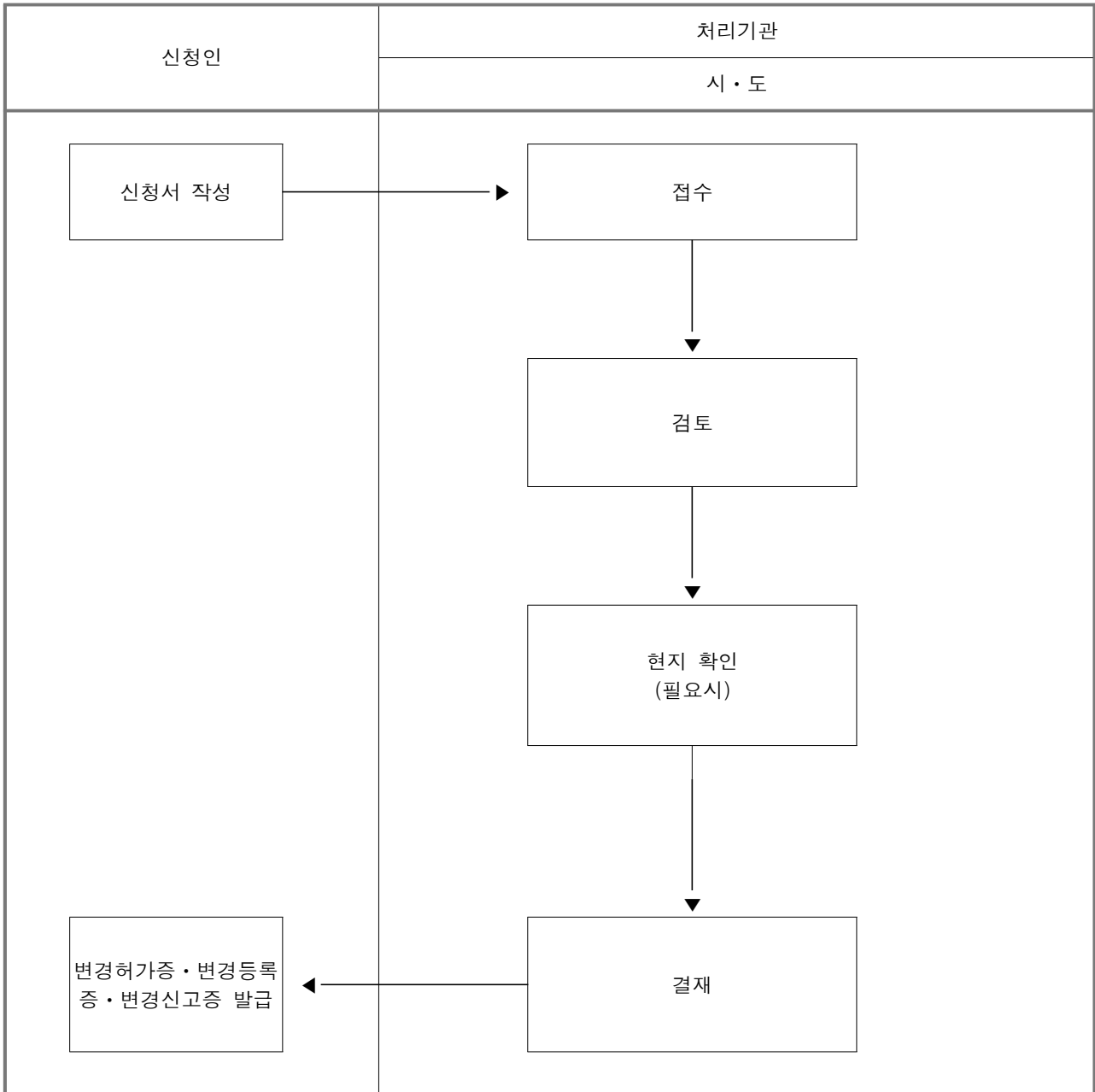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원본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앞 쪽)

제 호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1. 상호: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3. 소재지
가. 사무실: (전화번호:)
나. 보관시설:

4. 제조자

제조업체명	제조공장소재지	취수해역명

5. 제품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뒤 쪽)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5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① ----- ----- ----- ----- ----- -- 자,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 -- 등록,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사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2. (생략)

③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을,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

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 자, -----

-- 자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 변경등록,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

1. -----

-- 등록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2.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18호서식

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9호서식

3.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9호의2서식

④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조공정 및 절차 등
2. 제품의 성질·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

⑤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수입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 등
2. 제품의 성분 및 외관

⑥ 법 제27조제5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자

제25조의2(피한정후견인의 행위
능력 증명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
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
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는 행
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먹
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등록하
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
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
다.

제26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법 제27조제1
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
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
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
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먹
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
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

2. 보관시설의 소재지

제25조의2(피한정후견인의 행위
능력 증명방법) ① (현행과 같
음)

② -----

----- 행
위, -----

-- 행위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
른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
매업을 신고하는 행위가 -----
--.

제26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

----- 제9항-----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
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
의무 승계신고서에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
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
다.

②·③ (생략)

제30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먹는해
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
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
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취
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
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조업자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
의 제조업자등 행정처분대장에

-----.
제29조(영업승계의 신고) ①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 먹
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
업의 신고-----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2조제5항----- 먹는해
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
층수수입업자 및 먹는해양심층
수 유통전문판매업자(이하 “먹
는해양심층수 관련업자”--- 행
정처분-----.

② ----- 먹는해양심층
수 관련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먹는해양심층수 관련업자

기록·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u>행정처분대장</u>----- ----- ----- --.
--	---